

2023년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지원 공고

자금부족 및 경영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촉진과 기업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부산시 창업특례자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8일
부산경제진흥원장

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3년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지원
- 사업기간 : 2023. 2. 8.(수) ~ 자금 소진시까지
- 사업목적 : 자금부족 및 경영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촉진과 기업안정화를 도모
- 사업내용 :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추천지원
- 사업비 : 15억원

II 지원내용

- 지원내용: 창업 운전자금, 긴급구매자금 용자 추천지원
 - 대출금리: 연 2.7% 고정금리
 - 보증료: 0.6% 고정요율 (납부처 : 신용보증재단)

| 용자구분 | 개별 대출한도 | 상환조건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창업운전자금 | 50백만원 |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또는 3년일시상환 | - |
| 긴급구매자금* | 1억원 | 1년 또는 6개월 일시상환 (연장·회수보증 불가) | - 3개월 이내 매출예정증빙자료 제출업체로 신청국한 - 매출발생납품 계약서 등 필수제출 |

※ 긴급구매자금 : 생산(납품)계약을 체결하고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원자재 구입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단기자금 용자개념. 단, 긴급구매자금의 경우는 매출 예정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므로 사전문의 요망

III 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필수요건 충족 및 선택요건(3개 중 1개 이상)에 해당하는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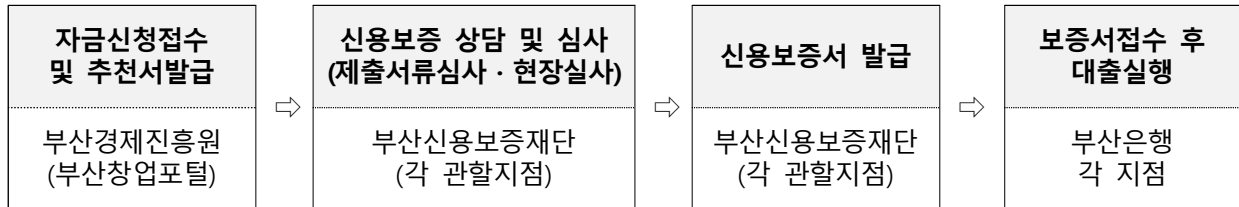
| 구 분 | 자격요건 |
|------|---|
| 필수요건 | <p>부산시 소재 사업자등록 7년 이내(보증일 기준) 기술창업* 기업</p> <p><기술창업>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(참고2. 기술창업 업종표 참조), 부산시 미래전략 산업(스마트해양, 지능형기계, 미래수송 기기, 글로벌관광, 지능정보서비스, 라이프케어, 클린테크 등)</p> |
| 선택요건 | <p>1. 기술창업 인큐베이팅, 재창업사업 등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</p> <p>2. 지역 대학 산하 및 타 정부기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</p> <p><지역대학 산하 창업지원> 창업보육센터, 창업지원단, 산학협력단, 링크플러스 사업 등</p> <p><타 정부기관 창업지원 > 정보산업진흥원, 디자인진흥원, 테크노파크, 인재평생교육진흥원, 창조경제혁신센터, 한국발명진흥원 등</p> |
| | <p>3. 부산시 소재 기술창업기업 중 기술력이 인정되는 자</p> <p><기술력 인정> 벤처기업, 인재육성형 중소기업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,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, 지식재산경영 중소기업, 지식재산권 등</p> |
| | |

* 기술력 인정 세부내용

| 구 분 | 내 용 | 세부내용 | 증빙서류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재권 | 특허권 | 특허등록(출원x) | 특허등록증 |
| 제품 인증 |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| 성능인증, NET, NEP, GS, 우수제품조달제품, 녹색인증,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등 | 인증서 |
| | 법정의무 인증 | KS, 환경마크, GR, K마크, Q마크, HACCP, KC, GMP,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| 인증서 |
| | 기타인증 | 기타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부여받은 인증 | 인증서 |
| 기업 인증 | 벤처기업 |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| 벤처기업 인증서 |
| |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|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|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|
| |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|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|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|
| |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|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|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|
| |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 중소기업 |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|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|

IV 지원절차 및 기관별 역할

○ 지원절차



○ 기관별 역할

| 지원기관 | 주요역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산광역시 | (지원총괄) 창업자금 대여 → 부산은행 15억 |
| 부산경제진흥원 | (운영총괄) 신청서 접수 및 자금추천서 발급 |
| 부산신용보증재단 | (보증지원) 창업기업 보증금액, 조건완화 및 우선권 부여 |
| 부산은행 | (자금대출)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15억원 內 |

V 신청방법 및 추천서 발급

○ 신청접수

- 접수 일: 격주 화요일 18:00까지 접수
 - ※ 격주 화요일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2주간 신청분 추천진행, 단 접수 시 자금소진 상황에 따라 추천 미진행 될 수 있음
- 상반기 접수 및 추천 일정 ※ 하반기 일정은 6월 이후 공지 예정

| 연번 | 신청접수 | 진흥원 요건검토 | 추천서 발급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차 | 공고일 ~ 2.21. | 2.22.~2.23. | 2.24. |
| 2차 | 2.22.~3.7. | 3.8.~3.9. | 3.10. |
| 3차 | 3.8.~3.21. | 3.22.~3.24. | 3.24. |
| 4차 | 3.22.~4.4. | 4.5.~4.6. | 4.7. |
| 5차 | 4.5.~4.18. | 4.19.~4.20. | 4.21. |
| 6차 | 4.19.~5.2. | 5.3.~5.4. | 5.8.(5일 공휴일로 차주 월요일 추천) |
| 7차 | 5.3.~5.16. | 5.17.~5.18. | 5.19. |
| 8차 | 5.17.~5.30. | 5.31~6.1. | 6.2. |
| 9차 | 5.31.~6.13. | 6.14.~6.15. | 6.16. |
| 10차 | 6.14.~6.27. | 6.28.~6.29. | 6.30. |

- 접수방법: 부산창업포털(busanstartup.kr)을 통한 신청·접수

- 첨부서류

- ① 자금신청서 및 운용계획서
-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③ 기타증빙
- 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
- ⑤ 창업지원확인서(지역 대학 산하 수혜기업, 타 정부기관 창업지원 수혜기업의 경우)
- ⑥ 기술력 인증 서류(지원사업에 수혜기업이 아닌 경우 제출)

<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>
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타 보증기관 통합한도 내(운전자금 50백만원, 긴급구매자금 1억원) 추천서 발급 및 보증지원
*** 통합한도(2억): 신용보증재단·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 전체 보증금액**

- 신청제한

- ▶ 신용등급 9~10등급인자
- ▶ 기존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한도만큼 진행 중이거나 보증 받고 3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
- ▶ **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2개 기관 보증 상품 동시 이용 중인 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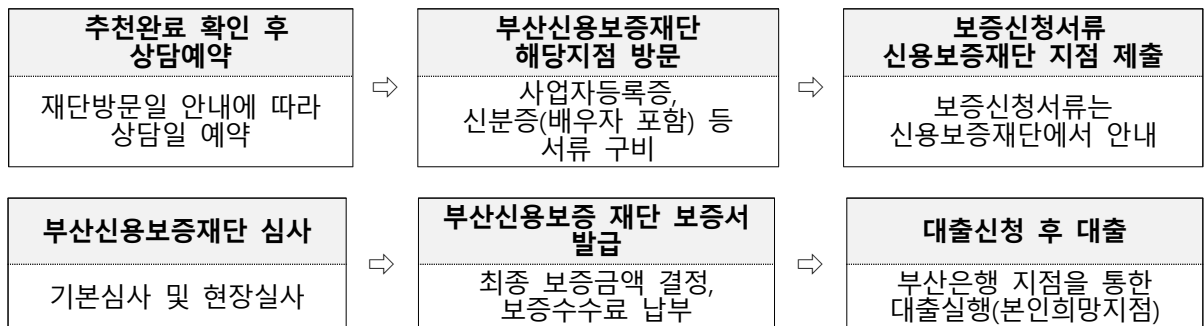
○ 추천일 : 월2회 (격주 금요일 추천)

※ 세부일정은 내·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.

○ 추천통보 : 신청자 이메일로 추천완료 및 추후 절차 안내

<추천서 발급 생략>
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추천서 발급은 생략하고, 추천된 자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송부하므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해당지점에 상담일정 예약 후 추후 일정 진행
 <추천서 기한>
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,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후 이후 절차 진행

○ 추천서 발급 이후 절차



※ 각 기관의 업무상황에 따라 차후 절차.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.

VI 유의사항

-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,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후 이후 절차 진행
- 추천서 발급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 상담 및 대출을 미진행 하는 경우 2024년도 특례자금 신청 및 추천 불가

VII 문의처

-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창업전략기획팀 한민정 주임
- 051-600-1867 / hanmj@bepa.kr

참고 기술창업 세부 업종 구분표

기술창업 업종(제2조제1호 관련)

| 제조업 부문(중분류 25개 업종) | | |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(중분류 15개 업종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분류 | 중분류 | 업종 | 대분류 | 중분류 | 업종 | |
| 제조업 (C) | (C) 10 | 식료품 제조업 | 정보통신업 (J) | (J) 58 | 출판업 | |
| | (C) 11 | 음료 제조업 | | (J) 59 | 영상,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| |
| | (C) 12 | 담배 제조업 | | (J) 60 | 방송업 | |
| | (C) 13 |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 | | (J) 61 | 우편 및 통신업 | |
| | (C) 14 |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| | (J) 62 |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| |
| | (C) 15 |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| (J) 63 | 정보서비스업 | |
| | (C) 16 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가구 제외 | |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(M) | (M) 70 | 연구개발업 |
| | (C) 17 |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| | (M) 71 | 전문 서비스업 |
| | (C) 18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| | (M) 72 |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|
| | (C) 19 |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| | (M) 73 |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|
| | (C) 20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의약품 제외 | 사업시 설 관리, 사 업지원 및 임대서비 스업(N) | (N) 75 | 사업 지원 서비스업 | |
| | (C) 21 |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| 교육서비 스업(P) | (P) 85 | 교육 서비스업 |
| | (C) 22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(Q) | | (Q) 86 | 보건업 |
| | (C) 23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| | (Q) 87 | 사회복지 서비스업 |
| | (C) 24 | 1차금속제조업 | 예술,스포 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(R) | (R) 90 | 창작,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|
| | (C) 25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기계 및 가구 제외 | | | | |
| | (C) 26 |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| | | |
| | (C) 27 | 의료,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| | | |
| | (C) 28 | 전기장비 제조업 | | | | |
| | (C) 29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| | | |
| | (C) 30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| | | |
| | (C) 31 |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| | | | |
| | (C) 32 | 가구 제조업 | | | | |
| | (C) 33 | 기타제품 제조업 | | | | |
| | (C) 34 |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| | | | |

※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에 따른 분류